

의안번호	2201275
의 퇴 인	송옥주의원
회 답 일	2024.7.5.
추계번호	24B14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30일의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제3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로 함	의무규정
3	안 제19조(육아휴직)제2항 단서 신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다만,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37조(벌칙)제4항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의2. 제1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남성 근로자에게 3개월보다 적은 기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게 한 경우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제1항	—	- 미대상 - 동 개정조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273호)을 통하여 재정소요 여부를 검토하므로 중복 처리하지 않음
2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제3항	—	- 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19조(육아휴직)제2항 단서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37조(벌칙)제4항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주에 대한 벌금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벌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배우자에게 적정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그 기간(1년) 중 3개월의 기간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임
- 안 제19조는 3개월의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①수급자 수에 ②지원기간과 ③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함
 - 동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 의무화에 따른 남성육아휴직자 수”에서 현행대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남성육아휴직자 수”를 차감하여 사업대상자를 산출해야함
 -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남성근로자의 자녀 유무에 관한 통계 및 출산 현황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를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Ⅲ. 부대의견

- 개정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2201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